

동물보건사 자격증 []재발급 []재부여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자격번호	발급일	년	월	일
------	-----	---	---	---

신청인	성명	한글	한자						
		영문			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					
	주소								
	자격	년	월	일	시험	제	회	동물보건사	자격시험

[] 재발급 사유	[]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[]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[]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
[] 재부여 사유	[]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[] 자격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

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6 및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의 [] 재발급 [] 재부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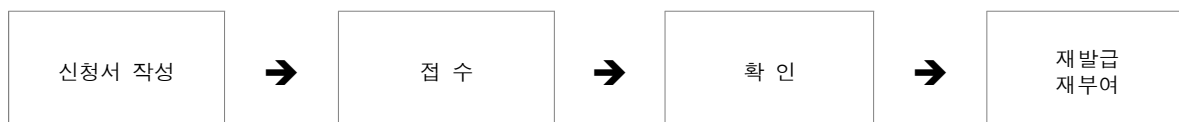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수입인지 붙이는 곳

첨부서류	<p>1.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</p> <p>가. 잃어버린 경우: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.5센티미터 세로 4.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1장</p> <p>나. 헐어 못 쓰게 된 경우: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</p> <p>다.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: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</p> <p>2. 자격증 재부여의 경우: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(법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</p>	수수료 2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